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 변경 대비표

칸서스자산운용㈜

1. 투자신탁의 명칭

- 칸서스법인 MMF 투자신탁 1 호(국공채)

2. 효력발생일

- 2016.05.18

3. 변경사유

- 집합투자업자보수율 및 판매회사보수율의 인하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 투자대상 및 투자제한 관련 사항 명확화 및 자구수정
- 자산의 매매/평가 이익 유보가능 문구추가
- 과세 및 관련법령에 관한 개정사항의 반영
- 정기개정으로 인한 통계자료 갱신

4. 신탁계약서 변경 내용

현 행	변 경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원화로 표시된 자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에 운용한다. 1. (생략) 2.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법 제71조 제4호 나목에 따른 주권관련 사채권 및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사채권은 제외한다)(이하 “국공채”라 한다) 및 기업어음증권. 다만, 환매조건부매수의 경우에는 남은 만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가.~사. (생략) 3.~4. (생략) 5. 만기가 6개월 이내인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에의 예치 6.~9. (생략) ②(생략)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원화로 표시된 자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에 운용한다. 1. (현행과 같음) 2.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다음 각목의 채무증권(법 제71조 제4호 나목에 따른 주권관련 사채권 및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사채권은 제외한다)(이하 “국공채”라 한다) 및 기업어음증권. 다만, 환매조건부매수의 경우에는 남은 만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가.~사. (현행과 같음) 3.~4. (현행과 같음) 5. 만기가 6개월 이내인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의 예치 6.~9. (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제19조(운용 및 투자 제한)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최상위등급 및 2%를 초과하여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에 투자하는 행위(다만, 어음의 경우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를 초과하여 최상위등급 및 1%를 초과하여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보며,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나. (생략) 3.~10. (생략) ②~④(생략)	**제19조(운용 및 투자 제한)**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현행과 같음) 2.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최상위등급 및 2%를 초과하여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에 투자하는 행위(다만, 어음의 경우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를 초과하여 최상위등급 및 1%를 초과하여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동일인이 발행한 어음에 투자하는 행위, 그리고 발행 당시 만기가 7영업일 이내인 전자단기사채의 경우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를 초과하여 최상위등급 및 0.5%를 초과하여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동일인이 발행한 전자단기사채에 투자하는 행위. 이 전자단기사채의 경우 채무증권의 편입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보며,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나. (현행과 같음) 3.~10. (현행과 같음) ②~④(현행과 같음)
제33조(이익분배)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다만, 이익금이 없는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 ②(생략)	**제33조(이익분배)**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한다. ②(현행과 같음)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

	이익
제39조(보수) ①~②(생략)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0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40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10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0	**제39조(보수)** ①~②(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20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0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10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0
제45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①(생략) 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4. (생략) ③(생략)	**제45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①(현행과 같음) 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4. (현행과 같음)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현행과 같음) ④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의 향후 처리 계획(해지, 합병, 모자형 전환, 존속 등)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50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①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수익자에 대하여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는 때에는 한국경제신문에 공고하되,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때에는 매일경제신문에도 공고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제 3 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공시(이하 “수시공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제50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①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가 수익자에 대하여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는 때에는 한국경제신문에 공고하되, 2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때에는 매일경제신문에도 공고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법 시행령 제 93 조제 2 항에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5.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 93 조제 3 항에서 정하는 사항	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에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율 4. 수익자총회의 의결내용 5.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93조제3항에서 정하는 다음 각 목의사항 가. 투자설명서의 변경(다만, 법 및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단순한 자구수정,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 양수 다.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법 시행령 제26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고· 게시한 경우에 한한다) 라.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마.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바.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제 2 항에 따른 수시공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	③제2항에 따른 수시공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모두 공시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 2. 판매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알리는 방법 3.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 2. 판매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알리는 방법 3.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
④집합투자업자는 법 시행령 제 94 조제 1 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 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19조에 의하여 공모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 및 증권발행실적보고서 등을 금융위원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의 경우 법 제12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법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 개월 이내에 제 32 조제 1 항에 따른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2.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3. 투자신탁의 해지 또는 해산	⑤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3개월마다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2.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⑥집합투자업자는 법 제 119 조에 의하여 공모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및 증권발행실적보고서 등을 금융위원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법 제 123 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법시행규칙 제 13 조 제 1 항 각 호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등 법 제90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후 2월 이내에 법 제248조에서 규정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70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네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 3 개월마다 법 제 88 조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제3항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2.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 만원 이하인 경우	
⑧신탁업자는 법 제 90 조제 2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 개월 이내에 법 제 248 조에 따른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가 자산보관・관리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 만원 이하인 경우	⑧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 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제3항 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⑨제 7 항 및 제 8 항의 규정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 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이하 이 항에서“보고서”라 한다)를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 또는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⑨집합투자업자는 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⑩집합투자업자는 법 제9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법 제239조의 규정에 따른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의 종료 2.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3. 이 투자신탁의 해지 또는 해산
제52조(수익증권의 통장거래) 수익자는 협회가 제정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	**제52조(수익증권의 통장거래)** 수익자는 협회가 제정한 ”수익증권저축약관”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

5. 투자설명서 변경 내용

<table>
<tr><th>항 목</th><th>정 정 전</th><th>정 정 후</th></tr>
<tr><td>요약정보</td><td>-</td><td>신설</td></tr>
<tr><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집합투자기구의 연혁</td><td>2015.03.23 기준</td><td>2016.03.23 기준</td></tr>
<tr><td>5.투자운용인력
가. 운용전문인력</td><td>2015.03.23 기준</td><td>2016.03.23 기준</td></tr>
<tr><td>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td><td>
<table>
<tr><th colspan="4">보수</th></tr>
<tr><td>판매회사</td><td>집합투자업자</td><td>신탁업자</td><td>일반사무관리회사</td></tr>
<tr><td>연
0.04%</td><td>연
0.03%</td><td>연
0.01%</td><td>연
0.01%</td></tr>
</table>
</td><td>
<table>
<tr><th colspan="4">보수</th></tr>
<tr><td>판매회사</td><td>집합투자업자</td><td>신탁업자</td><td>일반사무관리회사</td></tr>
<tr><td>연
0.02%</td><td>연
0.02%</td><td>연
0.01%</td><td>연
0.01%</td></tr>
</table>
</td></tr>
<tr><td>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td><td>1.채무증권(국공채)
남은 만기가 1 년 이내인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법 제 71 조 제 4 호 나목에 따른 주권관련 사채권 및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사채권은 제외합니다)(“이하 “국공채”라 합니다) 및 기업어음증권. 다만, 환매조건부매수의 경우에는 남은 만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가. 남은 만기가 5 년 이내인 국채증권
나.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다. 지방자치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관이 발행한 채권
라.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기관이 발행한 채권
마. 특별법에 의한 특수공공법인이 발행한 채권
바.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예금보험공사가</td><td>1.채무증권(국공채)
남은 만기가 1 년 이내인 다음 각목의 채무증권(법 제 71 조 제 4 호 나목에 따른 주권관련 사채권 및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사채권은 제외합니다)(“이하 “국공채”라 합니다) 및 기업어음증권. 다만, 환매조건부매수의 경우에는 남은 만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가. 남은 만기가 5 년 이내인 국채증권
나.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다. 지방자치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관이 발행한 채권
라.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기관이 발행한 채권
마. 특별법에 의한 특수공공법인이 발행한 채권
바.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예금보험공사가</td></tr>
</table>

	발행한 채권 사. 다만, 라목 및 마목의 기관은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도적으로 결손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관에 한합니다. - 채무증권(법 제 4 조 제 3 항의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 기업어음증권에 한하며, 환매조건부채권 매매는 제외합니다)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상을 운용하여야 합니다. 6.금융기관 예치 남은 만기가 6 월 이내인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각 목의 금융기관에의 예치	발행한 채권 사. 다만, 라목 및 마목의 기관은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도적으로 결손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관에 한합니다. - 채무증권(법 제 4 조 제 3 항의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 기업어음증권에 한하며, 환매조건부채권 매매는 제외합니다)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상을 운용하여야 합니다. 6.금융기관 예치 남은 만기가 6 월 이내인 법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각 목의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의 예치
나. 투자제한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 :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최상위 등급 및 2%를 초과하여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에 투자하는 행위.(다만, 어음의 경우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를 초과하여 최상위등급 및 1%를 초과하여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보며,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 69 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 :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최상위 등급 및 2%를 초과하여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에 투자하는 행위(다만, 어음의 경우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를 초과하여 최상위등급 및 1%를 초과하여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동일인이 발행한 어음에 투자하는 행위, 그리고 발행 당시 만기가 7 영업일 이내인 전자단기사채의 경우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를 초과하여 최상위등급 및 0.5%를 초과하여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동일인이 발행한 전자단기사채에 투자하는 행위. 이 전자단기사채의 경우 채무증권의 편입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보며,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table>
<tr><td></td><td>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및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 4 조제 3 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합니다)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td><td>해당하는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 69 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및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 4 조제 3 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합니다)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td></tr>
<tr><td>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td><td>
<table>
<tr><th>구분</th><th>지급비율
(연간, %)</th></tr>
<tr><td>집합투자업자 보수</td><td>연 0.030%</td></tr>
<tr><td>판매회사 보수</td><td>연 0.040%</td></tr>
<tr><td>신탁업자 보수</td><td>연 0.010%</td></tr>
<tr><td>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td><td>연 0.010%</td></tr>
<tr><td>기타비용</td><td>연 0.006%</td></tr>
<tr><td>총 보수・비용</td><td>연 0.096%</td></tr>
<tr><td>총 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포함)</td><td>연 0.096%</td></tr>
<tr><td>증권 거래비용</td><td>연 0.003%</td></tr>
</table>
※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으로써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td><td>
<table>
<tr><th>구분</th><th>지급비율
(연간, %)</th></tr>
<tr><td>집합투자업자 보수</td><td>연 0.020%</td></tr>
<tr><td>판매회사 보수</td><td>연 0.020%</td></tr>
<tr><td>신탁업자 보수</td><td>연 0.010%</td></tr>
<tr><td>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td><td>연 0.010%</td></tr>
<tr><td>기타비용</td><td>연 0.009%</td></tr>
<tr><td>총 보수・비용</td><td>연 0.069%</td></tr>
<tr><td>총 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포함)</td><td>연 0.069%</td></tr>
<tr><td>증권 거래비용</td><td>연 0.005%</td></tr>
</table>
※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으로써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td></tr>
</table>

	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합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14.03.24~2015.03.23]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14.03.24~2015.03.23]	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합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15.03.24~2016.03.23]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15.03.24~2016.03.23]
14. 이익 분배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 분배	(1) 이익분배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합니다. 다만, 법 제 242 조에 따른 이익금이 0 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합니다.	(1) 이익분배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합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 238 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 240 조제 1 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0 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 법 제 238 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법 제 240 조제 1 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의 분배 유보는 2016 년 4 월 1 일 이후에 결산·분배 할 때부터 적용되며, 이로 인한 투자자의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투자신탁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이익은 매년 과세하지 않고, 수익자의 일부 환매 또는 전부

		환매 청구가 있을 때에 해당 환매청구 분에 대하여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이는 수익자별 보유 수익증권에 대해 발생한 이익에 대한 과세시점을 환매시점까지 이연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2) 수익증권의 환매시점에 해당 수익증권의 보유기간 동안 유보된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이익을 포함한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 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와 같이 과세시점 이연의 효과가 수익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이익분배금에 의한 재투자 ①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수익증권을 매수 할 수 있습니다. ②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증권 매수금액의 납입이 완료 된 때에 신탁계약서 제 10 조제 1 항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2) 이익분배금에 의한 재투자 ①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②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증권 매수금액의 납입이 완료 된 때에 신탁계약서 제 10 조제 1 항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나. 과세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일반법인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15.4%(지방소득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

	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 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 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 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 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요약재무정보	2015.03.23 기준	2016.03.23 기준
2.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2015.03.23 기준	2016.03.23 기준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2015.03.23 기준	2016.03.23 기준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2015.03.23 기준	2016.03.23 기준

사항 가. 회사개요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2015.03.23 기준	2016.03.23 기준
라. 운용자산 규모	2015.03.23 기준	2016.03.23 기준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나.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3) 및 (4)의 사유로 임의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신탁계약서 제 50 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거나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가.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5) 수익자의 총수가 1 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 224 조의 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나.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3) 및 (4)의 사유로 임의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신탁계약서 제 50 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거나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상환대금은 해지일 등 약정된 지급일에 맞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최초 가

	(2)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4)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입계좌 별로 상환대금을 지급합니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4)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3) 및 (4)에 해당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의 향후 처리 계획(해지, 합병, 모자형 전환, 존속 등)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 결산서류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 개월 이내에 신탁계약서 제 32 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1.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2.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의 종료 3. 투자신탁의 해지 ②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제 1 항에 따라 제출 받은 서류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 결산서류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 개월 이내에 신탁계약서 제 32 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1.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의 종료 2.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3. 투자신탁의 해지 또는 해산 ②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제 1 항에 따라 제출 받은 서류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2) 자산운용보고서	③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 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과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③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 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 변경에 관한 공시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신탁계약서 제 37 조제 6 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신탁계약서 제 44 조 제 3 항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법시행령 제 217 조에서 정하는 사항 ○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집합투자업자의 변경(신탁계약서 제 44 조 제 2 항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신탁계약서 제 37 조제 6 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신탁계약서 제 44 조 제 3 항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법시행령 제 217 조에서 정하는 사항 ○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집합투자업자의 변경(법 시행령 제 217 조제 3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공시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공시하여야 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 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합니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법시행령 제 93 조제 2 항에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수익자총회의 의결내용 5.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시행령 제 93 조제 3 항에서 정하는 사항 ○ 투자설명서의 변경 ○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 그 밖에 수익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공시하여야 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 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합니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법시행령 제 93 조제 2 항에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수익자총회의 의결내용 5.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시행령 제 93 조제 3 항에서 정하는 사항 ○ 투자설명서의 변경(다만, 법 및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단순한 자구수정,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 123 조제 3 항제 2 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법 시행령 제 262 조제 1 항 후단에 따라 공고· 게시한 경우에 한합니다) ○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합니다. 이하 이 호에서 같습니다)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②제 1 항에 따른 수시공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 2. 판매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알리는 방법 3.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	법 제 192 조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 192 조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제 1 항에 따른 수시공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모두 공시하여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 2. 판매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알리는 방법 3.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③집합투자업자는 주주총회일부터 5 일 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③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1.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 월 30 일까지 직전 연도 4 월 1 일부터 1 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2.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